

부산지방법원 2022. 3. 3 선고 2020가단3318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4710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3. 3 선고 2020가단331879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광필

변 론 종 결 2022. 2. 10.

판 결 선 고 2022. 3. 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2. 2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48,830,1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830,1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3. C에게 변제기를 2015. 1. 3.로 정하여 1억 원 대여하였다. 원고는 C이
변제기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443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2019. 1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한 부산지방법원 2020나57561호 사건에서 2021. 7. 2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8. 1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은 2021. 12. 16. 기준으로 148,830,137원이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2. 20.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E를
남겼다.

다. 피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5. 2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할 당시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016. 2. 2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2/7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이 생전 C에게 2002. 12. 3.부터 2012. 12. 5.까지 합계 628,000,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고,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66,560,998원에 이르는데,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1,266,896,52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380,000,000원임을 고려하면

간주상속재산은 1,894,896,520원으로서, C의 상속분은 그 중 2/7인 541,399,006원에 불과하므로, C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포기할 상속분이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2. 12. 3.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까지 합계 329,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였고, 2006. 8. 23. F회사(피고는 C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주장임)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3.경부터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가족 사이에 변제기를 정하거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빈번한 점, C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수령한 것이 망인으로부터 그 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이라기보다 망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方便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망인이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게 한 후 망인의 자금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C에게 628,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망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바, 피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에는 2013. 12. 9. 전세금 30,000,000원, 전세권자 G 주식회사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7. 5. 15.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3 기재 부동산은 2020. 8. 22. 매매를 원인으로 2020. 8. 28.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이 방법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축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 18.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의 가액은 2,104,956,160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34,126,000원임은 피고가 자백하는 바이며,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759,082,160원(=2,104,956,160원+34,126,000원-380,000,000원)이고, 그 중 C의 상속분인 502,594,902원(=1,759,082,160원×2/7, 원 미만 버림)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148,830,137원이어서 위에서 인정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고의 채권액인 148,830,1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48,830,137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2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 149.4m²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49.11 m²

2층 104.97 m²

3층 104.97 m²

4층 104.97 m²

5층 104.97 m²

6층 104.97 m²

7층 104.97 m²

8층 106.53 m²

9층 59.21 m²

3. 경남 밀양시 답 99m²

2

